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8.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전 화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최 종 동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 당 자	심 연		043-719-2054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홍 정 익		044-202-2860
심리지원팀	담 당 자	구 재 관		044-202-387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음식점 등 방역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 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음식점 등 방역조치 추진실적 및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일일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을 비롯한 어르신 대상의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은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최근 물류센터에서 감염사례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음식점과 카페를 점검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동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방역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확진자가 급증하여 역학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자치구 역학조사 지원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이들은 기초·심층 역학조사 지원, 확진자 동선 추적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확인 등 현재까지 총 5,473건을 지원하였다.
    - 또한, 노숙인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돕기 위하여 노숙인 밀집 지역에 3개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7.17.~8.24)하고, 재난 지원금 신청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제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 그 결과 총 298건을 상담하여, 106명이 총 4,24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앞으로는 방역물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6일 결혼식장 37개소를 점검하여 집합 제한 인원 준수 여부와 방역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9월 1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시식구역(코너) 운영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군구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9월 7일부터 국군수도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경기도는 국군수도병원 등 총 51개소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취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상은 취업면접에 참여한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이며, 면접 1회당 3.5만 원, 최대 21만 원까지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
  - \* 근로기준시간(주 30시간) 삭제, 채용공고문 제출절차 생략

### 2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카페, 유홍주점 등 총 86.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98.5만 개소(누계)를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4,41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또한,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해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일체계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하는 4중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 4중 관리체계 :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한 확인점검, 지자체는 기존 점검 지속 실시, 식약처는 불시 합동점검 실시
-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음식점 심야 점검 및 프랜 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총 1.1만 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 □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코로나 우울 지원현황

-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 증가**, 그로 인한 **자살 증가 우려** 등 **코로나 우울** (블루) 현상 확산에 따라,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비상직통전화(핫라인, 1577-0199)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 \* 일일 정보제공(건): (8.14.) 3,085 → (8.20.) 6,244 → (8.26.) 10,193 → (9.4.) 12,300 일일 상담제공(건): (8.14.) 2,457 → (8.20.) 3,378 → (8.26.) 4,570 → (9.4.) 4,424
- 또한, 9월 3일부터는 코로나 우울로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이 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다.
  - 심층 상담은 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소지자 등의 전문인력이 최대 3회까지 진행한다.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 상담 중 즉각적인 개입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정신의료기관)로 직접 연계하거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요청한다.
  -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에서 상담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19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8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831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01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 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29명이며, 이 중 30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착용하고 있다.
- □ 9월 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만 2815개소, ▲ 학원·독서실 2,316개소 등 36개 분야 총 4만 508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5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 40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8반, 2,304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 용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역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접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피크, 종교시설, 실배 결혼자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 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화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납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MD방, 징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O 해당사항 없음  O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b>근무인원 제한 권고</b>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 자정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일) 자정까지 적용











##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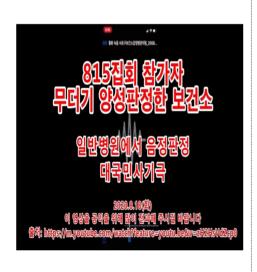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삼염병 확산 자난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